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3호로 채택

주체111(202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16호로 수정보충

제1장 우주개발법의 기본

제1조 (우주개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은 우주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과학 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우주개발은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탐사 및 리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활동으로서 우주개발에는 우주개발계획의 수립, 우주물체의 설계, 제작, 발사, 운용, 우주 과학연구 및 기술발전 등 우주의 개발 및 리용과 관련되는 여러가지 형태의 활동이 속한다.
- 우주물체는 우주공간에 발사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된 물체로서 우주공간을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관측로켓과 탄도미싸일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 우주하부구조는 우주물체를 발사하기 위한 시설과 우주공간에 발사된 모든 비행물체의 특성을 측정하고 조종하는 것을 비롯한 우주물체를 관리운용하는 지상장비와 설비이다.
- 위성관측자료는 위 성에서 수집 되어 지상에 전송되는 모든 자료로서 우주환경측정자료, 지구와 다른 천체에 대한 관측자료, 전자정찰자료와 함께 이를 가공 및 변환하여 얻어진 자료가 이에 속한다.
- 우주사고는 우주물체를 발사하고 운용하는 과정에 발생한 고장, 추락, 충돌, 폭발 등이다.

제3조 (우주개발의 기본원칙)

국가는 우주개발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고 자립경제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자 위 적국방력을 강화하는 원칙을 견지하도록 한다.

제4조 (안전보장원칙)

국가는 우주물체의 발사와 운용에서 선진과학기술과 국제적기준에 의거하여 그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한다.

제5조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

국가는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늘여 우주개발을 다그치고 우주과학분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제6조 (적용범위)

이 법은 우주개발에 참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우리 나라 령역에서 진행되는 우주개발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등록된 우주물체에 대하여서는 그 위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우주개발과 관련한 활동은 다른 법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우주개발사업의 조직

제7조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지위)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우주개발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제8조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임무와 권한)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종합적인 우주개발계획을 작성한다.
2. 우리 나라 령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우주개발사업을 감독, 통제한다.
3. 우주과학기술분야의 연구사업과 관련한 질서를 세운다.
4. 우주개발을 위한 하부구조건설을 지도한다.
5. 우주물체의 설계, 제작, 조립, 발사, 운용을 지도한다.
6. 위성관측자료의 수신과 처리 및 보급사업을 한다.
7. 우주개발의 안전을 보장한다.
8. 우주개발기술에 대한 인증사업을 한다.
9. 우주개발과 관련한 대외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한다.

10.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한다.

11.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제 9조 (우주개발기관의 임무)

우주개발기관, 기업소는 우주기구제 작설비를 과학화, 정밀화하고 생산능력을 높여 통신위성, 기상위성, 관측위성과 같은 실용위성과 그 운반수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0조 (우주개발전망계획의 작성과 승인)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우주개발의 목적과 사명, 원칙, 국가의 안전과 리익, 나라의 경제 적조건, 우주과학기술과 우주하부구조실태 등을 반영한 우주개발전망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주개발전망계획에 대한 승인은 최고인민회의가 한다.

제11조 (우주개발계획의 작성 및 집행)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승인된 우주개발전망계획을 리행하기 위한 단계별, 년차별, 항목 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우주개발에 대한 승인)

우주개발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수 있다.

우주개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주개발권리를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다.

제13조 (우주개발에 대한 승인취소)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가의 안전과 리익의 견지에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우주개발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제14조 (우주과학연구사업)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전국적범위에서 의 우주과학연구사업을 조직 한다.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을 통하여 해마다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에 우주과학연구과제를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으로 시 달하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총화하여야 한다.

우주과학연구과제를 받은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에서는 연구과제를 일정계획에 맞게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우주개발기술에 대한 인증)

우주개발과정에 이룩된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심의, 평가, 인증사업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한다.

우주과학기술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심 의신청문건을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6조 (우주물체의 설계)

우주물체의 설계는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기관이 한다.

우주물체의 설계에 대한 심의, 승인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한다.

제 17조 (우주물체의 제작과 조립)

우주물체의 제작과 조립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협동품제작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가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우주물체의 제작과 조립을 설계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우주물체에 대한 기술검사)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우주물체의 기술검사체계를 바로세우고 기술규정과 규격의 요구에 맞게 기술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술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우주물체는 발사할수 없다.

제19조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우주개발)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우주개발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제3장 우주물체의 발사와 등록, 운용

제20조 (우주물체의 발사신청)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주물체를 발사하려는 경우 발사신청문건을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 문건에는 우주물체의 발사목적과 용도, 우주물체의 수명 및 사용기간, 우주물체의 발사장소 및 발사예정일, 우주물체의 기술적제원 같은 내용과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우주물체의 발사허가)

국가우주개발지도 기관은 신청 문건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문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수 있다.

제22조 (발사허가의 취소)

다음과 같은 경우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발사허가를 취소한다.

1. 발사에정일로부터 정당한 리유없이 1년이상 지체한 경우
2. 발사허가신청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우주물체의 검사에서 기술적결함이 발로된 경우
4. 국가의 안전과 리익에 저해를 줄수 있는 경우
5.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부정 적영 향을 줄수 있는 경우

제23조 (우주물체의 발사와 관련한 통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경우 관련된 국가들과 해당 국제기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공할수 있다.

제24조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우주 물체는 등록을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소속되어 있다는것을 증명하는 표식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국가우주개발지도 기관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우주물체등록기관으로서 발사후 궤도에 진입한 우주물체에 대한 국내등록사업을 진행한다.

제25조 (우주물체의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우주물체의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주물체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우주물체의 발사기관
3. 발사장소와 날자

4. 우주물체의 기술적제원
5. 우주물체의 일반적기능
6. 기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우주물체의 등록부는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보관, 관리 한다.

제26조 (우주물체에 대한 소유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등록된 우주물체에 대하여 지상과 우주공간 등 그 위치에 관계 없이 소유권을 가진다.

제27조 (우주물체의 국제등록)

국가우주개발지도 기관은 등록된 우주물체를 외무성을 통하여 해당 국제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 (우주물체의 관제)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궤도상의 위성을 비롯한 우주물체들에 대한 관측과 조정을 진행하여 우주물체운용의 정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안전구역설정)

우주물체의 정상적이며 안정적인 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주물체주변에 필요한 범위의 안전 구역을 설정할수 있다.

제30조 (위성관측자료의 리용)

위성관측자료의 수신, 처리 및 보급과 관련한 사업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위성관측자료를 보급받은 기관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승인 없이 위성관측자료를 다른 기관에 넘겨주거나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제31조 (위성통신주파수의 분배)

국가우주개발지도 기관은 국가전파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정지 위성을 비롯한 실용위성을 리용하려는 기관에 주파수대역과 통신방식을 비롯한 기술지표에 대한 분배와 조정을 진행하며 기술지표를 분배받은 기관은 승인없이 그것을 변경시킬수 없다.

제32조 (지적소유권)

우리 나라에 등록된 우주물체에서 창조된 지적재산은 우리 나라의 령역에서 이루어진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법규범의 보호를 받는다.

제33조 (우주사고에 대한 조사)

우리 나라 령역에서 우주개발과정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와 사고후과를 가시기 위한 사업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지도밑에 한다.

제34조 (우주비행사의 구조)

우리 나라 령역이나 린접한 공해상에 우주비행사가 비상착륙, 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 가능한 방조를 제공하고 우주비행사를 발사국에 귀환시킨다.

제35조 (우주물체의 반환)

다른 나라의 우주물체가 우리 나라의 령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 발사국으로 반환한다.

제36조 (우주환경의 보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주물체의 발사와 운용에서 지상과 우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7조 (자재와 자금, 협동품의 생산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주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 협동품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우주과학기술인재양성)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주과학기술인재양성체계를 세우고 우주과학기술분야의 연구사업과 교육사업에 힘을 쏟으며 우주개발분야의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 있게 키워내고 그들의 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우주과학기술정보사업)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우주개발에 필요한 첨단과학기술자료를 비롯한 우주관련 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고 자료기지화하며 적극 보급활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주개발과 관련한 과학기술자료를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40조 (우주개발자들에 대한 조건보장과 우대)

내 각과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 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며 우주개발자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주고 우대하여야 한다.

제 41 조 (우주하부구조)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주물체발사시설과 우주활동에 필요한 지상장비, 설비 같은 전망적이며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우주하부구조를 제때에 원만히 갖추어야 한다.

제42조 (국제적교류와 협조의 실현)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주의 평화적개발과 관련한 국제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 우주개발분야에서의 협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우주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 우주기관들과의 교류와 협조는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을 통하여 진행한다.

제43조 (대응조치)

우리 나라의 우주개발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다른 나라의 비우호적인 행위에 대하여서는 우리 나라의 대응조치법에 따라 상응한 대응조치를 취한다.

제4장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4조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우리 나라에서의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한다.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우주개발에 대한 정연한 지도관리체계를 세우고 우주의 탐사 및 리용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45조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우리 나라 령역에서의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 부정적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손해보상)

우주개발과정에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피해를 준 책임있는 기관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지상 및 항공, 우주에서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업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을 통하여 한다.

제47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우주과학연구계획을 미달하였거나 승인없이 조절변경하였거나 계획수행률을 허위보고하

였을 경우

2. 우주개발과 관련한 협동품생산계획, 우주과학연구에 필요한 설비, 물자보장계획을 미달하였거나 승인없이 조절변경하였을 경우

3. 우주과학기술연구성과에 대한 심의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제때에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4. 우주물체에 대한 설계와 제작, 조립, 기술검사, 우주물체의 발사와 운용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켜 우주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우주물체관측설비를 비롯한 우주과학연구관련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

6.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우주개발과 그 결과에 따르는 자료를 리용하였을 경우

7. 우주물체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과정에 우주개발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시켰을 경우

8. 우주과학연구과제수행에 리용하게 된 로력과 자금, 자재, 설비를 다른 사업에 리용하였

을 경우

6.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우주개발과 그 결과에 따르는 자료를 리용하였을 경우

7. 우주물체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과정에 우주개발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시켰을 경우

8. 우주과학연구과제수행에 리용하게 된 로력과 자금, 자재, 설비를 다른 사업에 리용하였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48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